

대구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305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30590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12033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고, 피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희

변론 종결2020. 9. 17.

판결 선고2020. 10. 15.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1203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0. 4. 23. 접수 제10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B는 소외 D에게 대구지방법등기소 영천등기소 2002. 2. 9. 접수 제3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46호 사건에서 2017. 5. 30. "D는 원고에게 54,352,227원과 그 중 37,680,531원에 대하여는 2008. 5. 3.부터, 16,671,69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7.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청구취지상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이라 한다)를 각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채권자인데, D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을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D의 조카인데 청구취지 2항의 등기를 경료할 무렵 약 28세였고, 피고 C은 D의 딸인데 청구취지 1항의 등기를 경료할 무렵 약 27세 정도로 부동산을 매수할 정도의 자력이 없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을 경료할 무렵,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은 원고와 피고들간의 공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에 대한 판결문(갑 제1호증)과 등기부(갑 2 내지 4호증)이외에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의 추정력을 뒤집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무효의 등기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김수연

판사김낙형

별지